2026년도 연구중심병원 도약지원사업(C-LINK)

과 업 지 시 서(안)

제 1 조 (과업 개요)

과 업 명	인하대병원 C-LINK 사업 성과 문서화 및 기술동향 분석 지원 용역
발주기관	인하대병원
과업 기간	**계약 체결일로부터 2개월**
기초 금액	95,000,000 원
관련 사업	2026년도 연구중심병원 도약지원사업(C-LINK) 전담기관 : 한국보건산업진흥원(KHIDI)

제 2 조 (과업의 목적)

본 과업은 인하대학교병원이 수행 중인 C-LINK 사업 1단계(개념연구, 2026.04~2026.12)의 필수 성과 목표 달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, 그 목적은 다음과 같다.

- 특화 R&D 개념검증(PoC) 결과 3 건의 보고서 표준화 및 문서화 품질 확보
- 특화 R&D 연구개발계획서의 구조 설계 및 평가항목 대응 체계 확립
- 원내 연구 인프라 현황의 객관적 진단 및 확보 로드맵 도출
- 확정 연구주제 관련 글로벌 기술동향·특허 환경의 제 3 자 분석을 통한 객관성 확보
- 2 단계 본 연구 진입 평가 대응 논리의 사전 구축

제 3 조 (과업의 범위)

본 과업은 다음 4개 세부과업으로 구성한다.

1. 과업 ① — PoC 결과 문서화 지원 (3 건)

- PoC 보고서 표준 템플릿 설계 및 3 건 서식 통일
- 연구책임자가 제공한 원자료(raw data)의 표·그래프 시각화
- 보고서 구성 및 문장 교열,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제출 서식에의 정합화
- 평가위원 관점의 가독성 리뷰 및 편집 의견 제시

2. 과업 ② — 특화 R&D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지원

- 연구개발계획서 목차 구조 설계 및 평가항목 대응표 작성
- 연차별 마일스톤 및 정량지표 체계 설계 지원
- 정책 환경·시장 분석 자료 조사 및 계획서 반영 형태로의 정리
- 과업 ①의 PoC 결과를 계획서 본문에 반영하기 위한 편집 지원
- 계획서 전체 문장 교열 및 서식 정합화

3. 과업 ③-1 — 원내 연구 인프라 진단

- 최근 3 년간 원내 전 부서 연구 지표 정량 조사 및 데이터베이스화
- 확정 연구주제 수행에 필요한 인프라 현황 대비 격차(gap) 분석
- 2 단계 진입을 전제로 한 인프라 확보 로드맵(안) 제시

4. 과업 ③-2 — 기술동향 및 특허 분석

- 3 개 연구축별 글로벌 기술동향 조사 및 분석
- 특허 landscape 분석 및 주요 경쟁 기술 포지셔닝
- 확정 연구주제 관련 FTO(Freedom to Operate) 예비 검토
- 지식재산 확보 전략(안) 제시

제 4 조 (산출물 및 과업별 대가)

과 업	산 출 물	납품기한	수 량
①	PoC 결과보고서 편집본	계약체결일 기준 30일까지	3 건
②	특화 R&D 연구개발계획서 초안 및 편집본 (평가항목 대응표 포함)	계약종료일 기준 10일 전까지	1 건
③-1	원내 연구 인프라 진단 보고서 및 데이터베이스	계약종료일 기준 10일 전까지	1 건
③-2	기술동향 분석 보고서 (3개 연구축별 분책) 특허 landscape 및 FTO 예비검토 보고서	계약종료일 기준 10일 전까지	3축 / 1건

- 모든 산출물은 편집 가능한 원본 파일(HWP 또는 DOCX, XLSX, PPTX)과 PDF 를 함께 제출한다.
- 산출물은 발주기관이 지정한 서식 및 명명규칙에 따라 제출한다.

제 5 조 (위임 범위 및 제외 사항)

① 계약상대자에게 위임하는 범위는 문서의 편집·표준화·시각화·조사분석 및 평가위원 관점의 리뷰에 한정한다.

② 실험의 수행, 데이터의 생성, 과학적 해석 및 결론의 도출은 본 과업의 범위에서 제외한다.

③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 연구책임자가 생성한 데이터를 재해석하거나 새로운 과학적 결론을 도출하지 아니한다.

④ 모든 산출물의 저자성(authorship) 및 연구성과는 발주기관에 귀속되며,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아니한다.

제 6 조 (수행 방법 및 보고 체계)

1. 보고 일정

구 분	시 기	내 용
착수보고	계약체결일 기준 1주일 이내	과업 수행계획서 제출 · 투입인력 및 세부일정 확정 · 보안서약 체결
중간보고	계약체결일 기준 30일 이내	과업 진행 상황 및 중간 결과물 보고
최종보고	계약종료일 기준 1주일 전까지	전체 과업 종료보고

2. 협의 창구

- 발주기관 창구는 인하대병원 미래연구관리팀으로 일원화하며, 계약상대자는 연구책임자에게 직접 자료를 요청하지 아니한다.
- 주 1 회 이상 정기 진도 협의를 실시하며, 협의 결과는 계약상대자가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2 일 이내 제출한다.
-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 전담 책임자 1 인을 지정하고, 투입인력 변경 시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는다.

제 7 조 (보안 및 비밀유지)

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.

- 계약 체결과 동시에 비밀유지협약(NDA)을 체결하고, 투입인력 전원의 개별 보안서약서를 제출한다.
- 본 사업과 동일한 2026년도 연구중심병원 도약지원사업에 참여하는 타 기관의 동종 용역을 본 과업 기간 중 수임하지 아니한다.
- 환자 유래 데이터는 어떠한 경우에도 원본 형태로 제공되지 아니하며, 비식별 처리된 집계치에 한하여 제공된다.
- 과업 수행 중 취득한 일체의 자료 및 산출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에 귀속된다.
- 과업 종료 후 7일 이내에 제공받은 자료 및 사본 일체를 파기하고 파기확인서를 제출한다.

제 8 조 (지식재산권 및 성과의 귀속)

– 본 과업으로 생성된 모든 산출물 및 그에 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에 귀속한다.

– 계약상대자는 산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 3 자에게 제공하거나 자사의 실적·홍보 자료로 활용할 수 없다. 다만 발주기관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– 계약상대자는 산출물이 제 3 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함을 보증하며, 이로 인한 분쟁 발생 시 그 책임을 진다.

제 9 조 (검수 및 대가의 지급)

1. 검수

– 검수는 과업별로 실시하며, 발주기관은 산출물 접수일로부터 7 일 이내에 검수 결과를 통보한다.

– 보완 요구 시 계약상대자는 통보일로부터 7 일 이내에 보완하여 재 제출한다.

2. 대가의 지급 및 재원 구분

대가는 과업별 검수 완료 후 각각 청구·지급하며, 과업별 재원은 다음과 같다.

과 업	재 원
① ② ③-1	정부지원연구개발비 (국비)
③-2	기관부담연구개발비 (병원)

– 계약상대자는 위 재원 구분에 따라 과업별로 세금계산서를 분리 발행한다.

– 부가가치세는 해당 과업의 재원에서 함께 지급한다.

– 선금 지급 여부 및 비율은 발주기관 계약 규정에 따르며, 선금 지급 시 선금보증증권을 제출한다.

제 10 조 (계약상대자의 자격요건)

–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 12 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

– 나라장터에 학술연구용역 업종코드 1169 등록한 자

– 입찰공고일 현재 국가·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고 있지 아니한 자

– 입찰공고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는 자

– 최근 3 년 이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행 실적을 보유한 자

a.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지원 용역

b. 정부 R&D 기획 · 평가 대응 문서 작성 지원 용역

c. 기술동향 조사 · 분석 용역

d. 특허 분석(특허 landscape · FTO 등) 용역

(입찰공고일 기준 계약 완료 건에 한정)

제 11 조 (기타)

1.입찰참가자는 다음 각 호를 이행할 수 있어야 하며, 계약 시 아래와 같이 사업부서(인하대병원 미래연구관리팀)에 별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

– 본 과업 전담 인력 3 인 이상(책임자 1 인 포함)을 과업 기간 중 상시 투입할 수 있을 것

– 비밀유지협약(NDA) 체결 및 투입인력 개별 보안서약이 가능할 것

– 본 사업과 동일한 2026 년도 연구중심병원 도약지원사업에 참여하는 타 기관의 동종 용역을 본 과업 기간 중 수임하지 아니할 것

2. (분담이행방식) 구성 참여를 허용한다.

3. 과업의 일부를 전문업체에 하도급 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입찰 시 하도급 예정업체와 그 범위를 명시하여야 한다.

4.기타사항

- 과업 범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서면으로 정한다.
- 본 과업 종료 후 전문기관(한국보건산업진흥원) 연구개발계획서 최종 확정 단계에서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, 발주처는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한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다.
- 본 과업지시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의 계약 규정,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및 관련 고시에 따른다.